

『인권연구』 8(1): 211-227.

Journal of Human Rights Studies 8(1): 211-227.

DOI: <http://www.doi.or.kr/10.22976/JHRS.2025.8.1.211>

[현장논단]

아오테아로아 뉴질랜드에서 자연의 법인격 인정 상황과 도전과제

: 클라우스 보셀만 교수 인터뷰*

황 준 서**

목 차

1. 들어가며
2. 뉴질랜드에서 자연의 권리 인정 흐름
3. 자연의 권리와 인간
4. 자연의 권리를 둘러싼 쟁점과 딜레마

1. 들어가며

인간과 자본의 이익을 이유로 무분별한 자연파괴를 허락한 법질서를 반성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흐름이 전 지구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 중 ‘자연의 권리(rights of nature)’는 인간과 인간이 설립한 가상의 조직(국가와 기업 등)뿐만 아니라 실존하는 주체로서 자연의 지위를 인정하려는 접근이다. 특히 자연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격적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법인격(legal personhood)’을 인정하는

* 인터뷰 수락을 승인해 주신 『인권연구』 편집위원회와 녹취록을 매끄럽게 다듬어준 양준하 님께 감사드립니다.

** 함부르크대학교 지속가능성미래연구센터(DFG Humanities Centre for Advanced Studies “Futures of Sustainability”) 연구원

방식이 오늘날 자연의 권리를 제도화하는 기본적인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자연의 권리 옹호자들은 이러한 제도 변화가 자연의 내재적 가치를 존중하는 방식일 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수평적인 관계를 맺기 위한 주춧돌이라고 주장한다(김왕배, 2022; 박태현, 2019; Boyd, 2017; Nash, 1989). 그래서 자연의 권리를 옹호하는 ‘인정투쟁’은 자연을 착취할 수 있는 피조물로 여겨온 서구 중심 법률질서로부터 대안을 추구하는 맥락에서 환경정의운동·선주민권리운동·탈식민운동 등 다양한 사회운동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성장했다(Gilbert, 2022; Hwang, 2023; O’Donnell et al., 2020).

현재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볼리비아, 에콰도르, 뉴질랜드, 잉글랜드, 브라질, 스페인 등 점점 많은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강과 산, 바다의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자연의 법인격 인정 경로 또한 헌법, 환경법, 지방자치단체 조례, 법원 판결, 시민숙의 및 청원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¹⁾

한국에서는 천성산 도롱뇽, 산양 등 동물을 소송당사자로 하여 구분별한 개발사업을 막으려는 시도가 꾸준히 있었다. 비록 비인간 생명들이 원고 자격을 인정받지 못해 소송이 결실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도전은 한국사회 안에서 ‘자연의 권리’ 내지 ‘자연의 법인격’ 문제를 제기한 선구적인 사례로 남아 오늘날 자연의 법인격 실현가능성과 한계를 모색하는 논의에 기여하고 있다. 지금 제주도에서는 남방돌고래를 ‘생태법인’을 가진 법적 주체로 인정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한국에서도 조만간 자연의 법인격 인정 사례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박태현, 2022).

자연의 권리는 인간을 넘어선 권리 패러다임의 등장이라는 의의가 있지만, 동시에 정확히 같은 이유로 회의적 반응과 정치적 반발에 직

1) 국가별 자연의 권리, 생태거버넌스, 동물권 등 생태사법(Eco Jurisprudence) 제도 도입현황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ecojurisprudence.org/dashboard/?map-style=political>.

면해있다. 자연의 권리 옹호자들 앞에는 ‘누가 권리를 가진 자연인가’, ‘누가 자연의 권리를 위해 말할 수 있는가’, ‘자연의 권리와 인간의 소유권은 양립가능한가’, ‘자연이 권리를 가지면 인간의 일상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소위 선주민성(indigeneity)을 상실한 사회에서 자연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등 여러 ‘인권의 난제’들이 놓여있다(Tanasescu, 2022).

필자는 한국에서 자연의 권리 옹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녹색연합 황일수, 박은정 활동가와 함께 여러 강과 산의 법인격을 인정한 아오테아로아 뉴질랜드(이하 ‘뉴질랜드’)를 방문하여 자연의 권리 입법이 이뤄진 이후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으며, 어떤 난제들이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자연의 권리를 논할 때 뉴질랜드 사례가 많이 언급됐지만, 자연의 권리 인정 이후 현장의 변화를 살펴본 자료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번 현장 논단 기록이 자연의 권리 연구와 캠페인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인터뷰 내용은 클라우스 보셀만(Klaus Bosselmann) 오클랜드대학 법대 명예교수와)와 나눈 이야기를 발췌하여 1문 1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보셀만 교수는 오랫동안 뉴질랜드 환경법센터(New Zealand Centre for Environmental Law)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근대 법체계가 가진 생태적 허점을 파악하여 지속가능성 원칙을 법의 중심에 놓기 위한 차원에서 자연의 권리, 생태법(ecological law) 등을 연구했다. 그의 저서 중 *When Two Worlds Collide: Society and Ecology*는 『법에 갇힌 자연 vs 정치에 갇힌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에 번역되어 있다.

2) 자세한 소개는 다음을 참조. <https://profiles.auckland.ac.nz/k-bosselmann>.

2. 뉴질랜드에서 자연의 권리 인정 흐름

질문: 오늘 대답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연의 권리에 관한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 뉴질랜드에서 사회적 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와이탕이 조약(Treaty of Waitangi)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와이탕이 조약은 마오리족과 영국 국왕 측 대표단이 1842년에 맺은 협약으로, 뉴질랜드로 건너온 잉글랜드 선교사들과 정착민(settlers)³⁾ 집단, 토착 마오리족이 공존하기 위한 방식을 규정한 평화협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국제법상 조약은 주권을 보유한 집단끼리 맺은 협정을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면 당시 뉴질랜드로 이주한 잉글랜드인들은 이 땅(현재 뉴질랜드)에 살고 있던 마오리족의 주권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정착민들이 그 점을 온전히 인정한 적은 없지만요.

와이탕이 조약 체결 이후 뉴질랜드는 영국으로부터 독립된 국가로 변모했는데, 그 과정에서 와이탕이 조약은 근대 뉴질랜드 국가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하나의 미미한 사건처럼 치부되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에 이르러 전 세계 많은 곳에서 탈식민운동이 힘을 얻었고, 뉴질랜드에서도 식민지 이주민들보다 이 땅에 먼저 뿌리내린 마오리족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운동이 활발해졌습니다. 그 덕분에 와이탕이 조약을 뉴질랜드 건국헌법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며, 이는 마오리족의 관습적 권리 인정과 마오리와 ‘파케하’ 사이 협력을 보장하는 시금석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파케하는 마오리어로 백인 등 비-마오리 집단을 의미합니다.

3) settler를 통상 ‘정착민’으로 번역하기는 하나, 여기서는 문맥에 따라 ‘정착민’, ‘이주민’, ‘침략자’ 등으로 옮겼다.

질문: 뉴질랜드 자연의 권리 사례를 다룬 많은 논문과 신문기사들이 와이탕이 조약을 언급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와이탕이 조약과 자연의 권리 사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1970년대부터 법원에서 영국과 뉴질랜드 정부가 과거에 마오리족을 상대로 저지른 부정의와 잔혹행위를 배상할 도덕적·법적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고, 이에 따라 화해과정(settlement process)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옛 식민지 정부의 토지 강탈이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로 대두했죠. 뉴질랜드 정부는 영국 국왕과 이를 계승한 뉴질랜드 정부의 역사적 채무와 책임을 인정하면서, 개별 마오리족 집단과 화해를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였고,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배상금 문제도 다루어졌지만, 마오리족에게 이는 매우 부차적인 문제였습니다. 이들에게는 ‘유엔 선주민권리선언(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과 같은 국제법에 담겨 있는 선주민으로서 마오리의 독립, 주권, 자결권을 비롯해 언어, 문화, 정체성의 완전한 인정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2010년대에 이르러 뉴질랜드 정부와 테우레웨라(Te Urewera) 일대에 거주하는 마오리족 단체는 옛 테우레웨라 국립공원의 권리를 인정하기 위한 협상을 더욱 활발하게 전개했습니다. 원래는 국가 소유의 국립공원이었던 테우레웨라 지역을 마오리족의 소유로 전환하고, 국립공원 지위는 계속 유지할지 결정하는 협상이었는데요. 테우레웨라 땅은 국가와 마오리족 그 어느 쪽에도 귀속되지 않는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협상이 이렇게 매듭지어진 이유는 마오리가 타인의 것과 대립해 무언가를 내 것으로 소유한다는 인식이 없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마오리의 세계관에서는 내가 땅이고, 땅이 나이기 때문에 분리된 소유관계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 서구의 사고방식에서는 항상 누가 법적으로 자연을 소유하는가에 관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당시 국립공원은 국왕, 말하자면 공유지로서 납세자들의

소유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사고방식은 당연히 인간이 땅의 한 부분이며 그것이 우리의 문화를 만든다는 ‘마오리 관습(Tikanga Maori)’을 침해한 것이었습니다.

이 맥락에서 테우레웨라는 2014년 뉴질랜드에서 처음으로 법인격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결코 좋은 사례는 아니었습니다. 테우레웨라에서는 뉴질랜드 보전부(New Zealand Department of Conservation)⁴⁾가 야생생태계 보호 및 복원사업, 등산객 접근성 증진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테우레웨라의 법인격이 인정된 이후 보전부는 모든 사업을 중단하고 마오리족 자치단체에 땅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이양했습니다. 그러나 마오리족에게는 테우레웨라를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자금과 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래 취지대로 법인격 제도가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다만,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이제 법인격을 가진 테우레웨라가 법정에서 ‘법률로서 인정된 나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는 길은 열렸습니다.

이후 2017년에 왕가누이 강(Whanganui River), 가장 최근인 2025년에 타라나키 산(Mount Taranaki)이 테우레웨라와 유사한 법인격 지위를 얻었습니다. 이 법률들은 자연을 ‘인간 또는 유기체처럼 살아 있으며 분리불가능한 존재’라고 규정하면서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이해하는 마오리 세계관과 자연을 테우레웨라, 왕가누이 강, 타라나키 산처럼 개별 생태계로 표현하는 서구의 인식체계 사이 조화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자연의 법인격을 인정하는 법률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자연 그 자체에 목소리를 부여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권리의 용법을 활용하여 ‘자연이 존재할 권리’, ‘자연이 번성할 수 있는 권리’라는 식으로 법률에 표현한 것이고요.

4) 자연을 그 상태로 보호하여 남겨두는 것을 ‘보존(preservation)’, 원형을 유지하면서 자연을 활용하는 방식을 ‘보전(conservation)’으로 구분한다 점을 고려하여 보전부로 번역했다. 한국 자연환경보전법의 영문 명칭도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이다.

서구 법체계가 가진 여러 모순 중 하나는 인간뿐만 아니라 국가와 기업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왜 인간과 기업, 국가, 또는 기타 법인만이 법체계에서 법원의 판결이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지위를 인정받아야 할까요? 이에 대한 명쾌한 답을 서구 법체계 안에서는 찾기 어렵습니다. 자연의 권리 담론은 이러한 한계에 도전하는 접근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만 저는 자연의 권리 제도 역시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뉴질랜드 사회에서 자연의 법인격 인정은 일보진전이기도 하지만, 일보후퇴이기도 합니다. 서구 전통 안에서 등장한 근대 주권국가로서 뉴질랜드가 고수하는 법제도와 마오리의 철학과 권리 사이 간극을 메꾸기 위한 실용적인 이유로 자연의 일부분에 법인격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제도 변화가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는 아직 모릅니다.

3. 자연의 권리와 인간

질문: 이제 뉴질랜드에서 비인간 존재가 권리주체로 실재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자연의 법인격/권리 옹호운동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운동과 법적 변화가 마오리의 지위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데에도 기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뉴질랜드 사례는 전 세계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에콰도르, 볼리비아, 인도, 방글라데시 등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서구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자연의 법인격을 인정했기 때문이죠. 다만 뉴질랜드에서 자연의 권리 담론은 아직 법률가나 생태보호론자, 환경주의자와 선주민권리 옹호자들 등 일부의 관심사로 남아있을 뿐 사회 전반의 공감을 얻지 못했습니다.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어 보세요. 이 주제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에게 왕가누이 강이 법인이라는 걸 아냐고 물어보면 대다수는 당신을 가

만히 쳐다보면서 ‘무슨 말을 하는거냐’고 되묻거나, ‘들어보기는 했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약간 생소한 주제라고나 할까요. 오히려 뉴질랜드 사회 바깥에서 훨씬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가누이 강 지역에 있는 마오리족 자치단체들은 이제 강이 법인격을 가진 주체라는 사실을 일반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주제에 관심이 있는 학자나 법률가들과 소통하는 것보다 강이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들과 소통이 훨씬 어렵습니다. 마오리족이 설립한 기관인 ‘테 코푸카(Te Kopuka)’는 왕가누이 강 일대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강을 위협하는 농업, 공장 등 문제를 논의하고, 왕가누이 강물을 오uckland(Auckland)의 식수로 공급하려는 계획 등을 검토하면서 지혜를 모아 강이 진정으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하죠. 자연의 법인격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데 필요한 전 사회적 학습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가누이 강의 법인격 인정은 강의 온전한 상태(integrity)를 신성하게 여기고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생태적 온전성(ecological integrity)은 잘 알려진 법적 개념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나라들이 흔히 ‘연성규범(soft law)’⁵⁾이라고 불리는 여러 국제환경조약을 비준했으며, ‘지구 생태계의 온전성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할 의무’를 다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제가 인용한 이 구절은 1992년 제1차 지구정상회의에서 채택한 ‘리우선언(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 담겨 있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각국 정부에게 선언만 하고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려 합니다.

리우선언 같은 국제협약은 생태적 온전성의 보호를 약속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강은 인간에게 유용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보호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왕가누이 강의 법

5) 법률상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사회제도와 구성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구속력을 가진 규범을 의미한다.

인격을 인정한 ‘테아와투푸아법(Te Awa Tupua Act)⁶⁾’은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법은 강의 보호자로서 선출될 수 있는 사람들이 강의 필요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는 시점까지 서로를 교육하면서 강을 보호하며, 강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마오리족의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구 법체계에서도 전혀 이질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실용적입니다.

인간과 법인격을 가진 자연 사이 관계는 부모와 미성년 자녀 관계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대신해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자녀를 소유해서가 아니라 자녀에 대한 후견인/보호자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향유하기 위해 적절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보호자/후견인 논리는 우리가 아는 모든 법체계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주민 관점과 비-선주민 관점이 강의 안녕을 도모하기 위한 공동의 목적 아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왕가누이 강의 법인격 인정을 꼽습니다. 우리는 법률가처럼 환경이 어떻게 법에 어울리는지 생각하는 사고방식으로부터 멀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생태적 온전성을 기초로 세상을 인식하고, 법이 이 관계에 어떻게 맞춰져야 하는지 질문해야 하죠. 그래서 저는 자연의 권리 논의가 이 맥락에서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오로지 이러한 맥락에서만 유효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질문: 앞서 여러 번 언급된 수탁자 또는 보호인 개념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연의 보호인을 누가 맡을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현재 뉴질랜드에서는 마오리 부족이 법인격을 가진 생태계의 수호자로 인정받는데, 과연 그들만이 유일한 수호자 자격을 갖추고 있는 걸까요?

6) ‘Te Awa Tupua’는 마오리어로 ‘신비의 강(the supernatural river)’라는 뜻이다.

테아와투푸아법 제정에 따라 뉴질랜드 정부와 마오리 공동체가 각각 1명씩 총 2명의 보호인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 보호인들은 함께 강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며, 그 역할은 조사, 연구 등 강에 관한 지식 생산은 물론 법정 소송이나 의사결정과정 참여까지 다양합니다.

누가 수탁자 또는 보호인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수탁자 개념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존 로크와 같은 대의민주주의 옹호자들은 의회를 시민들이 가진 정치적 의지의 수탁자로 언급했습니다. 의회는 우리를 대리하여 행동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신뢰는 권력 통제에 있어서 필수 요소입니다. 더 나아가 신뢰는 인류학적, 철학적, 심리학적 범주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인간은 가족과 친구라는 기초적인 사회 단위에서부터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해서 그 관계를 이웃과 지역사회로 확장합니다. 이 신뢰는 종종 ‘계약(covenant)’이라고 불립니다. 계약은 공동체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본질적인 유대관계입니다.

신뢰에 대한 탐색은 인간이 자연을 위한 수탁자가 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자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모두 자연을 사랑합니다. 누가 숲과 나무, 일출의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자연의 아름다움과 자원을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는 자연을 보호하려는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신뢰와 애정이 자연을 수호하고 지키려는 의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살고 있으며, 이 체제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신뢰에 기초한 권리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서로를 신뢰하고, 함께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따라서 저는 자연의 법인격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임명된 수탁자 또는 보호인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인간 모두가 지구의 수탁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약 100개의 환경, 토착민, 인권 조직이 자연의 권리를 의미 있는 보편적 선언으로 번역하기 위해 노력한 끝에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하며 헤이그 평화궁에서 ‘헤이그 원칙’을 채택했습니다. 인간의 권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반쪽인 의무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요. 당신의 인권은 내가 당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인권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상호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권리는 이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가 필요합니다. 이 의무는 정부는 물론이고, 우리 각자도 분담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의무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헤이그 원칙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는 인간공동체가 아니라,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헤이그 원칙은 인권과 지구에 대한 수탁자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누군가가 부당하게 대우받을 때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기꺼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본능은 항상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죠. 인간은 자연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4. 자연의 권리를 둘러싼 쟁점과 딜레마

질문: 한편 자연의 권리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권리를 가지고, 민족 국가나 기업 같은 인공적 존재들은 창설을 기점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인간에보다 먼저 오랫동안 존재해 온 자연은 자연의 권리 법률이 제정된 시점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봐야할까요? 아니면 자연의 권리가 인권과 인공적 존재들의 권리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자연의 권리를 둘러싼 많은 근본적인 오해를 보여주는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연이 존재하기 위해 인간으로부터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의 존재를 그 자체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고수한다면 ‘아름다운 산에는 권리를 부여해야지’, ‘저 강에는 주지 말아야지’ 하는 식으로 사고방식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자연의 권리 담론이 지향하는 바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1972년에 <나무는 법정에 설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유명한 논문에서 자연의 권리를 처음 언급한 법률가로 알려진 크리스토퍼 스톤(Christopher Stone)과 활동을 함께했을 정도로 나이가 꽤 있습니다.⁷⁾ 저는 1980년대에 그를 처음 만나서 자연의 권리에 관한 그의 주장을 독일에 널리 알리기 위해 함께 움직였습니다. 스톤은 논문에서 역사적으로 권리주체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그에 따라 ‘놀랍게도’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서구 전통에서 이러한 변화가 지난 100~150년에 이르러서야 일어났다는 점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말이죠. 어쨌든 그는 인권의 역사적 확장성에 주목하면서 인간 사이 평등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 사이 평등한 관계를 논증하며, 자연이 인간보다 더 근본적인 존재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자연에 대한 인간의 도덕적 책임을 확대하고자 했죠.

자연의 권리를 올바르게 개념화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노력은 효과적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생태적 법치 또는 생태적 헌법이 제도적으로 안착한 세상에서 자연의 권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

7) 보셀만 교수는 스톤보다 앞서 자연의 권리를 주창했던 사람으로 고도프레도 스텡진(Godofredo Stutzin)을 언급했으며, 스톤도 스텡진의 저술에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고도프레도 스텡진은 독일계 칠레인으로 자연을 향한 정외론에 관한 여러 저술을 남겼다. 보셀만 교수는 엘버트 슈바이처(Albert Schweitzer)의 ‘생명에 대한 경외심(Ehrfurcht vor dem Leben)’도 자연의 권리 존중에 필요한 마음가짐이라고 강조했다.

다고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단순히 이 강이나 저 산에 권리를 주자고 한다면, 우리는 그 논의가 가지는 구체적인 의미를 잃고 오히려 역효과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 권리를 인정했으니 이제 할 일은 끝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일상으로 돌아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자연의 권리를 옹호할 때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질문: 자연의 권리 인정은 민주적인 참여와 생태적 온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증진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특히 오늘날 민주적인 퇴행이 빨라진 상황에서 범정을 넘어 자연의 권리가 개념으로서나 운동 차원에서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비단 와이탕이 조약을 ‘재해석’하려는 뉴질랜드⁸⁾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한국 등 여러 민주사회에서 말이죠

간단히 말하자면 ‘문제는 계속 남아 있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 대응을 살펴봅시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경주에서 뒤처지는 상황에 빠지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체제 아래 많은 이들이 이미 대응을 포기하고 있죠. 1.5도 감축 목표는 사실상 실패했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냉소적인 태도로 아예 기후변화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파리협정을 탈퇴했죠.

이런 상황에 대해 두 가지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민주주의가 위협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민주주의는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항상 열망이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우리가 계속 배우고, 왜

8) 뉴질랜드에서는 최근 노동당을 꺾고 우파 정당들이 연립정부를 구성했는데, 이들은 ‘마오리족에게 지나친 특혜’를 부여하는 현재 와이탕이 조약 해석을 ‘뉴질랜드인 모두가 평등한 방식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가 필요한지를 이해할 때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하나의 제도이며, 존속할 수도 있고 언젠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저항이 계속될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모든 위기에는 항상 대항운동(counter-movement)이 존재했기 때문이죠.

또한 오늘날 법제도가 인간이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면밀히 뜯어봐야 합니다. 인간과 자연의 공생관계는 서구 세계에서 잊혔지만, 다행히도 서구의 영향이 적었던 다른 문화권에는 살아있습니다. 여기서 ‘서구’란 지리적으로 유럽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럽의 이원론적 철학에 영향을 받은 비유럽 지역들도 있기 때문이죠. 서구 전통의 뿌리로 알려진 대략 3,000년 전 그리스 철학은 인간이 어떤 식으로든 자연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을 전파했지만, 그러한 사고방식을 따르지 않은 문화권도 있습니다. 현재 서구 문화가 지배적이지만, 아시아와 아프리카 전역에 서구와 다른 양질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국 문화, 한국 문화, 아프리카 문화와 많은 마오리 문화들이 그들의 고유성을 지니고 있듯이 말이죠.

앞으로의 도전과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자연의 권리 논의에 대해 낙관적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과 제한된 물리적 공간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날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또 다른 시나리오는 일론 머스크의 사고를 따르는 것입니다. 즉, 화성으로 가는 거죠. 이러한 생각은 오늘날 사고방식에 많은 영향을 미쳐서, 이런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인간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를 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좋은 소식은 사람들이 그 상황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은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닙니다. 자본주의는 그런 소비자를 원하지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권력자들은 시민들을 단순한 소비자나 고객으로 취급하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민주주의의 주체인 시

민입니다. 민주주의는 잠재적으로 매우 강력하지만, 단순한 절차로서가 아니라 윤리로서 그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시민으로서 민주주의 체제에서 살고 있으며, 기꺼이 맡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지도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위와 직접행동으로 해결해야겠죠.

질문: 뉴질랜드에서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환경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통상 환경부는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개발사업 담당 부처보다 힘이 약한데요 뉴질랜드는 어떻습니까?

뉴질랜드는 헝가리, 이스라엘과 함께 1990년대에 의회 직속 환경대표(Parliamentary Commissioner for the Environment)라는 환경옴부즈만(Environmental Ombudsman)을 최초로 임명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뉴질랜드도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신자유주의 광풍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그래서 환경옴부즈만 같은 환경책임 제도들이 외면당하고, 충분한 재정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의 수탁자로서 세계 최초로 환경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 나라라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노동당-녹색당 연립정부에서 현재의 국민당과 행동당, 뉴질랜드 제일당이 구성한 우파 정부로 정권교체가 일어나면서 이러한 기구들에 대한 지원이 끊기고, 환경 관련 법률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보호제도가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주는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이름과 달리 다행스럽게도 지속가능성 원칙을 자연보호에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한 자원관리법(Resources Management Act 1991)은 지난 25년 동안 비교적 잘 작동해 왔습니다. 다만 자원관리법은 환경보호의 관료화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법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을 안내할 지침이 부족했던 탓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뉴질랜드 환경법 체계의 전면적인 개혁 필요성이 대두했고, 저신다 아던이 이끌던 이전 정부에서 개혁

안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로 만들어진 신규 자원관리법은 자연의 권리 인정을 포함하여 생태계의 온전성 보호를 주요 목표로 삼았습니다. 새로운 자원관리법은 2023년 8월에 시행되었는데, 그 직후 11월에 뉴질랜드에서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죠. 이 선거에서 승리한 우파 세력이 구성한 정부는 가장 먼저 이 법을 폐지하고, 이전 자원관리법으로 되돌렸죠.

이제 정부는 자원관리법을 두 개의 새로운 법안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하나는 환경을 보호하고, 다른 하나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요.⁹⁾ 정부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재산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경제 개발 후에 고려해야 할 부차적인 관리 대상으로 취급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죠. 이전 정부는 정반대 입장을 견지했었습니다. 환경이 우선이고 재산권은 다음이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 법의 미래가 어떻게 달라질지, 그리고 자연의 법인격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누구도 정확한 예측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성과를 완전히 뒤엎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9) 여기서 환경보호를 위한 법률은 ‘자연환경법(Natural Environment Act)’이고, 재산 보호 및 개발 관련 법률은 ‘도시계획법(Planning Act)’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 김왕배. 2022. “‘인간너머’ 자연의 권리와 지구법학: 탐색과 전망.” 『사회사상과 문화』 25(1): 1-41.
- 박태현. 2019. “에콰도르 헌법상 자연의 권리, 그 이상과 현실.” 『환경법연구』 41(2): 107-141.
- 박태현. 2022. “자연의 권리론.” 『환경법연구』 44(3): 95-140.
- Boyd, David. 2017. *The Rights of Nature: A Legal Revolution that Could Save the World*. Toronto: ECW Press.
- Gilbert, Jeremie. 2022. “The rights of nature, indigenous peoples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From dichotomies to synergies.” *Journal of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13(2): 399-415.
- Hwang, Juneseo. 2023. “Building Sustainable Peace through the ‘Rights of Nature’ in Western Societies.” *Journal of Human Rights Studies* 6(1): 149-188.
- Nash, Roderick Frazier. 1989. *The Rights of Nature: A History of Environmental Ethics*. Madison, Wisconsi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O'Donnell, Erin, Anne Poelina, Alessandro Pelizzon and Cristy Clark. 2020. Stop Burying the Lede: The Essential Role of Indigenous Law(s) in Creating Rights of Nature. *Transnational Environmental Law* 9(3): 403-427.
- Tanasescu, Mihnea. 2022. *Understanding the Rights of Nature: A Critical Introduction*. Bielefeld: Transcript.